

1일 1지문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022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23학년도 7월 모의고사 22~25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오수길이가 먼저 용모에게 알은체를 했다.
 “위디 가나?”
 “심심해서 예까지 나와봤구먼.”
 용모가 다가가며 대꾸하자 조순만이라도 얼굴을 걷으며,
 “장보러 나가남?”
 하고 물었다.
 “아침버텀 장에 가봤자 별 볼일 있간디. 나이타에 지름이나
 놓까 허구……”
 [A] 하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고개를 꾸뻑 하여 여겨보니 느
 림새 위뜸 고향성이 아들 성문이였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장끼를 물리고 있었다.
 “웬 게냐. 니라 잡었데?”
 용모가 물었다.
 “으만무지루 칩닝쿨 올무를 해 났더니 오늘 아침에 가봉께
 모가지가 옹혀 죽었더라너먼그려.”
 오가 아이 대신 그렇다고 일러주었다.
 “잡었으면 앓구 있는 아버지나 묶어 디리지 위디 가지구 가
 는 겨?”
 용모가 나무라는 투로 한 말에 오는,
 “학생이가 여적지 못 일어났나 봐. 위디가 위째서 못 일어
 난 다나? 누운 지두 달포 가차이나 될 텐디.”
 하며 염려하였고 조는,
 “원체 읍는 살림에 약을 먹을라니 되게 짜는가 벼. 담뱃값
 허게 팔어 오라더라.”
 장끼를 어루만져가며 성문이 말로 대꾸했다.
 “좀 들헌지 그저 그 타령인지, 나두 자주 못 들여다봐
 서…… 니 아빠가 팔어 오라더란 말여?”
 용모가 성문이더러 물으니 녀석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나가나?”
 조가 묻고,
 “누가 팔어 봤으야지.”
 오가 고개를 가웃하는데,
 “삼천 원 아래루는 안 팔 겨유.”
 성문이가 어린 것답지 않게 흰소리를 했다.
 “글쎄 말여, 드른 것이긴 해두 그 돈 주구 먹을 사람이 있
 으까……”
 용모는 막연하게 중얼거리고 나서 가던 길을 다시 이었는
 데, 성문이가 졸래졸래 뒤따라오고 있었다.
 [B] 용모가 성문이 손에서 핑을 넘겨 받아 든 것은 읍내 초입
 에 들어서기 직전이었다. 그것은 물건을 흥정하기에는 애가
 너무 어리고, 뿐만 아니라 곁에서 말마디나 거들어 다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쥐게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용모는 [핑] 날갯죽지를 쥐고 앞뒤로 내들거리며 장꾼들 틈
 으로 들어갔다. 보자는 사람만 나서면 아무라도 붙들고 흥정
 하여 웬만하면 얼른 넘겨주고 아이를 일찍 들여보낼 셈이었
 다. 그는 하던 대로 먼저 어리전에 들렀다. 그날도 돼지 새끼
 염소 닭 오리부터 억지로 젓 썬 강아지, 생쥐만 한 고양이
 새끼까지 고루 나왔는데, 용모가 그곳을 먼저 찾아간 것은
 핑 임자가 있으리라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에 나오면 으레 거
 기서부터 둘러보았던 습관으로서였다.

[중략 줄거리] 장터에서 '용모'는 핑을 잡았다는 오해로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용모를 폭행하고, 자신의 추측대로 진술서를 작성한다. 결국 용모는 수렵 금지 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차례가 용모였다. 용모는 대답을 하고 일어서면서,
 “암만 생각해 봐두 말여, 고연히 덧널 게 아니라 내가 현
 짓이라구 뒤집어쓰는 수박에 읍겼다.”
 내게 꺾속말을 하고 나갔다. 그가 움직이자 새삼 점심에
 마신 술 냄새가 물씬했다. 판사는 기록을 한눈으로 훑고 나
 더니,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뿐 아니라 입산 금지와 낙엽 채취를
 비롯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
 라는 것을 알 만한 분이 왜 이런 짓 했어요?”
 [C] 판사는 앞서보다 훨씬 부드러운 어조였으나 그만큼 위
 엄이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용모는 거듭 읍한 뒤
 에도 잔뜩 지르숙어 가지고 입을 못 열고 있었다.
 “핑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비록 참새 한 마리라도 그것
 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보호하자는 건데,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판사가 거듭 나무라셔야 용모가 대답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눅이 들었거나 겁에 질린 음성이 아니었다.
 “물런 그렇지유. 그러나 말입니다, 핑은 말입니다, 과연 현
 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두 문제란 말입니
 다. 보호할 건 보호해야 마땅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령지 않단 말입니다. 실지 농작물을 망치는 해조는 으레
 참새만 긴 줄 아시는데 말입니다. 핑의 피해는 말입니다,
 사실 농군에게는 말입니다, 훨씬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이
 것은 그냥 참고로 아시라구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D] 용모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다는 투로 원기 있게 말했
 다. 그것은 술기운 덕도 아닌 것 같았다. 지은 죄 없이
 고개 조이고 살아온 사람이 오랜만에 켜보는 기지개와 같
 은 몸짓으로 믿어야 될 성싶었다.
 판사가 고개를 가웃하고 나서 용모를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서 핑은 잡아도 무방하다, 해조를 퇴치했다— 이겁니
 까?”
 “도깃자루 감으로 나무를 찍을 때는 쥐고 있는 도깃자루를 기
 준해서 찍는다는 말도 있지만 말입니다, 물런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오? 당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등쌀에 야생
 동물이 안 남아나니까 보호하자고 하는 것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디유, 제가 뭐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제가 잘못된 것은 제가 벌을 받아야
 옹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저도 법의 보
 호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으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오?”
 “예, 그러믄유. 여기는 바깥허구 달려서 여러 가지 것을 보
 호하는 법정이라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는디 말입니다.
 동물에 물격이 있으면 저두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두
 야생 동물— 아니 그게 아니라, 야생 인간인디 말입니
 다…… 야생 인격이 물격보다두 거시기허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읍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 나는 용모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물은 부드러운
 나 추운 겨울에 얼면 굳어져 부러진단던, 어디서 들은 말
 이 떠올랐다.
 판사가 기록집을 젓혀놓으며 판결했다.

“피의자가 개전의 정이 전혀 안 보여…… 법정에 출두하는데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횡설수설하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본보기를 삼아야 해요. 벌금 2만 원—”

-이문구, 「관춘수필」-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순만은 성문이 장애 가는 이유를 용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 ② 용모는 장애 보고 돌아오는 길에 성문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다.
- ③ 오수길은 고학성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성문의 말을 통해 알게 된다.
- ④ 고학성은 아들을 장애 보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약을 사 오도록 한다.
- ⑤ 성문은 조순만의 말을 듣고 거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게 된다.

23. 꺾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모가 농민으로서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②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용모의 이기적 욕망이 투영된 대상이다.
- ③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용모의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용모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 주는 사건의 원인이 되는 소재이다.
- ⑤ 흥정의 상대를 찾으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24. [A]~[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여겨보니’와 ‘성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다른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 ‘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관련된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 ‘판사는’과 ‘용모는’으로 시작되는 문장을 보면,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의 시선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D]: ‘아닌 것 같았다’와 ‘믿어야 될 성싶었다’를 보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발화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 ‘지켜보다가’와 ‘떠올랐다’를 보면, 작품 속의 서술자가 인물을 관찰하며 떠오른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다음은 이 작품이 발표된 시기의 신문 기사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일보 1974년 △월 △일

조수 보호는 됐지만 농가 보호는 어디로

지난 1972년부터 조수 보호 정책에 따라 야생 동물의 전면적인 수렵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다. 해당 조치 이후 야생 동물 보호라는 목적은 이루었지만, 이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수렵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데, □□군의 경우 농작물 생산량이 계획보다 30%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도 쏟아지고 있어, 야생 동물을 자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① 조수 보호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용모는 울무에 잡힌 꿩을 파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야생 동물의 자율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판사가 용모에게 자연 보호가 당면 과제임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③ 늘어난 야생 동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용모가 꿩도 농작물을 해치는 해조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강제적 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셌다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반발하는 용모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겠군.
- ⑤ 농가 1가구당 월 평균 수입이 3만 원을 웃돌았다는 기사 내용을 보니, 판사가 용모에게 내린 2만 원의 벌금형이 용모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었겠군.